

측량업 등록신청서

접수번호	접수일	발급일	처리기간	7일				
신청인	성명 :	법 인 등 록 번 호 :						
		사 업 자 등 록 번 호 :						
	휴대전화번호 :	전자우편 :						
	☐ SMS 수신 동의	FAX번호 :						
	주소 :							
등록사항	상 호 :	대표자 :	지적측량	일반측량	공공측량			
	소재지 :		등록번호					
☐ 본점	측지측량	연안측량	지하측량	영상도화	영상처리	수치지도	지도제작	항공측량
☐ 지점								

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44조제2항,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라 측량업 등록을 신청합니다.

신청인
국토지리정보원장
시·도지사
대도시 시장
귀하
년 월 일
(서명 또는 인)

신청인 제출서류	1. 보유하고 있는 측량기술자의 명단 2. 제1호의 인력에 대한 측량기술 경력증명서 3. 보유하고 있는 장비의 명세서 4. 제3호의 장비의 성능검사서 사본 5.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보유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	수수료 2만원
국토교통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확인사항	1.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(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) 2.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(정보처리기사의 경우만 해당합니다)	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사업자등록증명 및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*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(국가기술자격증의 경우에는 사본)를 제출해야 합니다.

신청인(대표자)
(서명 또는 인)

처리절차

